# 튜닝부품 안전확인 업무 등에 관한 규정

튜닝부품 안전확인 업무 등에 관한 규정

## 목 차

제1장 총칙1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튜닝부품시험
제4조 튜닝부품시험의 신청2
제5조 접수 및 계획 수립
제6조 시험의 실시
제7조 결과처리
제3장 튜닝안전확인
제8조 기술위원회의 설치
제9조 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 기술위원회의 소집 및 심의 등
제11조 기술위원회의 위원의 제척사유 등5
제12조 시험기관의 지정
제13조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4조 튜닝안전확인부품 대상 및 기준
제15조 튜닝부품제작자등 등록
제16조 신청서 접수 등
제17조 튜닝안전확인심사
제18조 튜닝부품 안전 확인서의 발급 등7
제19조 튜닝안전확인부품의 표시
제4장 튜닝인증부품등에 관한 업무8

## 

#### 튜닝부품 안전확인 업무등에 관한 규정

2024. 06. 11 제정(규정 제1472호) 2025. 02. 10. 일부개정 (규정 제1500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97호) 제4조 및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98호) 제5조, 제6조, 제10조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해야 하는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은 부품에 관한 안전확인 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튜 닝부품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기술위원회 구성·운영, 튜닝인증부품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튜닝부품"이라 함은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 거나 부착물을 추가하여 자동차의 튜닝을 목적으로 하는 부품을 말한다.
- 2. "튜닝인증부품"이라 함은 튜닝부품 중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튜닝 부품의 성능 및 품질에 관한 인증을 받은 부품을 말한다.
- 3. "튜닝안전확인부품"이라 함은 튜닝부품 중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제 2호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해야 하는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은 튜닝부품을 말한다.
- 4. "튜닝부품시험"이라 함은 튜닝안전기술원에서 튜닝부품의 성능과 품질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동차규칙"이라 한다) 또는 그 밖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하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 5. "튜닝부품제작자"라 함은 튜닝안전확인부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를 말한다.
- 6. "기술위원회"라 함은 튜닝부품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 7. "튜닝안전확인업무"라 함은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해야 하는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는 업무를 말한다.
- 8. "튜닝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튜닝부품의 운영, 관리 및 안전확 인업무 등을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 9. "운영부서"라 함은 튜닝부품의 시험, 안전확인, 적합조사, 기술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10. "운영부서장"이라 함은 운영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1

- 11. "튜닝안전확인심사"라 함은 튜닝부품의 안전확인을 위해 신청서류 및 튜닝부품의 시험 결과가 안전확인기준에 적합하지 여부를 확인하는 심사를 말한다
- 12. "튜닝안전확인표시"라 함은 튜닝안전확인심사를 완료한 튜닝부품에 확인표장 및 관리번호 등을 함께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 13. "튜닝부품인증관리전산망"(이하 "전산망"이라 한다)이라 함은 튜닝부품 관리를 위해 구축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말한다.
- 14. "튜닝부품적합조사"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11에 따라 튜닝부품인증기관의 튜닝부품인증업무 수행과 튜닝부품인증을 받은 부품의 성능·품질상태 등을 확인하는 조사를 말한다. <개정 2025.02.10.>
- 15. "적합조사책임자"라 함은 튜닝부품적합조사 사업에 대한 연간계획 수립, 예산관리 및 튜닝부품적합조사를 총괄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 16. "시험담당자"라 함은 튜닝부품의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튜닝부품 안전확인 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 「자동차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 제2장 튜닝부품시험

- 제4조(튜닝부품시험의 신청) 시험담당자는 신청인이 튜닝부품시험을 신청한 때에는 제출 서류 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튜닝부품시험 접수 및 결과 발급대장에 기록한다.
- 제5조(접수 및 계획 수립) ① 튜닝부품시험 신청 접수 시 시험담당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험을 구분하여 시험일시, 기간, 장소 및 필요한 자료 등을 신청자와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한 후 운영부서장에게 보고한다.
- 1.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튜닝안전확인부품의 안전확인시 현
- 2. 자동차규칙 또는 그 밖에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튜닝부품시험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계획을 변경하려면 신청자와 협의하여 운영부서장에게 보고한 후 시험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시험의 실시)** ① 시험담당자는 자동차규칙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81호) 또는 그 밖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튜닝부

- 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시험결과 재시험이 필요하면 신청자와 협의한 후 재시험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부서장에게 보고한 후 시행한다.
- **제7조(결과처리)** ① 시험담당자는 튜닝부품시험을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성적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신청인에게 교부하며 1부는 작성일로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② 튜닝부품시험이 종료된 후에는 결과를 기술원의 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튜닝부품시험 접수 및 결과 발급대장에 기록한다.

#### 제3장 튜닝안전확인

- **제8조(기술위원회의 설치)** ① 운영부서는 튜닝안전확인업무 등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술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 ② 기술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튜닝안전확인부품의 대상선정에 관한 사항
- 2. 튜닝안전확인부품의 기준 제 · 개정에 관한 사항
- 3. 튜닝안전확인부품의 기준 적합성 확인결과의 적정성 심의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튜닝안전확인부품의 안전 및 관리를 위하여 운영부서장이 별도로 정한 사항 <개정 2025.02.10.>
- **제9조(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기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운영부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02.10.>
-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자동차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 2.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자동차와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10년 이상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자동차와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4.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기술사 또는 기능장으로서 10년 이상 자동차 관련 업무에 좋사한 사람
-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소비자보호기관에서 10 년 이상 소비자보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
- 6.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7. 자동차 제작 및 부품제작 등과 관련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있었

던 사람

- 8.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자와 동등한 정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 ③ 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운영부서장이 임명한다.
- ④ 기술위원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 1. 회의 일시 및 장소
- 2. 출석위위
- 3. 심의 내용 및 의결사항
- ⑤ 위원은 안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위원회 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에 대한 직무상 비밀이용금지 및 누설 금지 등을 위해 별지 제2호서식의 보완 및 청렴 서약서를 운영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02.10.>
- ⑥ 운영부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강사료등제수당지급세칙」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⑦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 하다.
- ⑧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술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10조(기술위원회의 소집 및 심의 등) ① 운영부서장은 기술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기술위원회의 진행을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운영부서 소속 직원으로 한다.
- ②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부서장이 수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안건이 적합하지 않거나, 심의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분기별 기술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운영부서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기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5명 이상으로 개의하여야 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하도록 할 수있다.
- ⑥ 기술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공단, 튜닝부품인증기관 등의 관계자를 기술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기술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등) ① 기술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 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관여한 경우
- 6. 위원이 해당 안건의 부품제작자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 7. 위원이 속한 법인 등(최근 3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를 포함한다)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 8. 최근 2년 이내에 위원이 해당 안건의 부품제작자등과 관련된 자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 9. 최근 2년 이내에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안건의 부품제작자등과 판매위 탁계약, 부품공급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 10. 최근 2년 이내에 위원이 속한 법인 등과 해당 안건의 부품제작자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상법」에 따른 모자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
- ②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 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술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의 결정을 한다. 다만, 위원장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술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 ④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안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하여야 하고,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안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 제12조(시험기관의 지정) ① 운영부서는 공단에서 튜닝안전확인부품에 대한 시험을 수행할수 없는 경우에는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시험기관을 지정하여 튜닝부품의 성능 및 품질에 대한 시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부서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시험가능한 항목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튜닝부품에 대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험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운영부서장은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기관의 시험시설 확인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02.10.>
- ④ 운영부서는 제3항의 심사결과가 적합한 경우 시험기관의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시험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⑤ 운영부서는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을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⑥ 운영부서의 시험기관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공단은 시험기관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
- 제13조(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운영부서장은 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업무의 정지를 명할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02.10.>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 2. 부적절한 방법으로 시험을 시행한 경우
- 3. 운영규정에 위반하여 시험업무를 행한 경우
- 4.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업무를 거부한 경우
- 제14조(튜닝안전확인부품 대상 및 기준) 튜닝안전확인부품(이하 "확인부품"이라 한다)의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8조에 따른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정하고, 제28조에 따라 운영하는 전산망에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을 게재하여야 한다.
- 제15조(튜닝부품제작자등 등록) ① 튜닝부품의 튜닝안전확인심사를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튜닝부품제작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튜닝부품제작자(이하 "제작자"이라 한다) 등록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운영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운영부서는 서류가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튜닝부품제작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전산망을 이용하여 신첫 및 등록 할 수 있다
- 제16조(신청서 접수 등) ① 제1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튜닝안전확인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튜닝부품 확인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 1. 신청부품 관련 규격서 사본 및 외관도
- 2.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3. 별지 제9호서식의 대표자 서약서
- 4. 튜닝부품의 시험결과를 증빙하는 자료(신청 시 이미 시험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 5. 그 밖에 기술원의 장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기술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산망을 통하여 함 수 있다.
- 제17조(튜닝안전확인심사) ① 제16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운영부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 이 안전확인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1.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적정성
- 2. 튜닝부품 시험결과의 적정성
- 3. 그 밖에 기술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② 운영부서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 적합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공단(지정된 시험기관을 포함한다)은 시험을 시행하고 시험이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 적합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운영부서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한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부서는 신청인에게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청 할수 있다.
- ④ 운영부서는 신청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 유를 명시하여 심사를 종결한다.
- ⑤ 제2항 단서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신청인은 공단(지정된 시험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정한 수탁용역비를 직접 공단 또는 시험기관에 납부하거나 계좌이체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공단(지정된 시험기관을 포함한다)은 제14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험결과를 운영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8조(튜닝부품 안전 확인서의 발급 등) ① 운영부서는 제17조에 따른 튜닝부품 확인 신청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합격으로 판정 시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튜닝부품 안전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불합격으로 판정 시에는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② 운영부서는 제1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서 정한 관리번호, 확인부품명, 확인서 발행일 등에 대한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확인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미 교부받은 확인서와 관련 중빙서류를 첨부하여 확인서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고,이 경우 운영부서는 증빙서류가 기준에 적합한 경우 30일 이내에 확인서를 재발급 해야한다

- 1. 확인서를 분실하였거나 확인서가 훼손된 경우 <개정 2025.02.10.>
- 2. 그 외, 기술원의 장이 재발급 사유로 판단하는 경우
- ④ 제1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확인서 내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받은 확인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튜닝부품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유영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 1. 확인부품의 양도 · 양수에 따른 권리변동이 있는 경우
- 2. 기타 확인서의 기재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 ⑤ 신청인이 제4항에 따른 튜닝부품 안전 확인서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9조(튜닝안전확인부품의 표시) ① 제18조에 따른 튜닝부품의 안전확인을 받은 자는 별표 1에 따라 공단이 발행한 튜닝안전확인표시(이하 "확인표시"라 한다)를 튜닝부품에 동봉하여야 하며 튜닝부품에도 육안으로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훼손되지 않도록 별도의 확인표시를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튜닝부품의 재질, 형상 등에 의해 확인표시가 불가능 할경우에는 관리번호만 표기할 수 있다.
- ② 확인부품을 자동차에 장착하는 경우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의 햇빛가리개 안쪽에 공단이 발행한 확인표시를 부착하여야 하고 장착 이력을 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③ 전산망에 장착 이력 등록 시에는 튜닝부품 확인을 위해 자동차등록번호, 튜닝부품 장착 사진, 장착일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 ④ 확인표시는 확인부품 포장재, 서류, 홍보자료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확인표시의 크기를 축소 또는 확대하여 홍보 및 광고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확인표시가 튜닝부품 확인을 받은 자의 모든 제품이 인정을 받은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확인부품명 및 확인 일자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제4장 튜닝인증부품등에 관한 업무

- 제20조(튜닝부품인증 기술위원회의 설치) ① 운영부서는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술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 ② 기술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튜닝인증부품의 대상선정에 관한 사항
- 2. 튜닝인증부품의 기준 제 · 개정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튜닝인증부품의 안전 및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사항 <개정 2025.02.10.>
-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위원회 운영 및 소집 등에 관한 사항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

용한다. <개정 2025.02.10.>

제21조(판매현황 등의 파악) 운영부서는 튜닝인증부품 판매현황을 파악하려는 경우에는 튜닝부품인증기관 통계 및 제작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제5장 튜닝부품적합조사

- 제22조(튜닝부품적합조사 자료제출 요구) ① 적합조사책임자는 튜닝부품적합조사 계획수립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튜닝부품인증기관 또는 제작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는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적합조사책임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튜닝부품적합조사를 위한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적합조사책임자가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제23조(조사대상 선정 및 구매 등) ① 튜닝부품적합조사용 튜닝부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02.10.>
- 1 튜닝부품적합조사 선정 부품 중 최근 3년 동안 파매량이 많은 부품
- 2. 튜닝부품적합조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하였던 자동차부품
- 3. 언론 등 사회적 문제가 된 튜닝부품
- ② 튜닝부품은 시험담당자가 별도의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시점에 부품판매점(직영 서비스센터, 총판 또는 대리점) 또는 온라인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직접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사무처리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 ③ 튜닝부품적합조사용 튜닝부품은 시험담당자가 현장 구매 또는 인수 시에 부품의 이상 유무. 손상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24조(튜닝부품적합조사 시행) ① 적합조사책임자는 튜닝부품적합조사 진행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유선이나 이메일 또는 전산망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제작자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시험담당자가 튜닝부품적합조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규칙 및 시행세칙 또는 그밖에 규정된 시험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③ 시험담당자는 부품을 직접 시험할 수 있는 시설이 기술원에 없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시험기관에 시험을 대신 수행하게 할 수 있고, 필요 시 입회하여 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
- ④ 시험담당자는 제작자등이 튜닝부품적합조사 과정 등의 참관을 요청한 경우에는 참관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담당자는 제작자등으로부터 별지 제12호서식의 참관사실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제작자등은 튜닝부품적합조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이의 신청서를 참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험담당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참관 요청이 없을 시 시험담당자가 수행한 시험준비 및 진행과정 등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으로 간주하고 튜닝부품적합조사를 시행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이의 신청서를 받은 시험담당자는 적합조사책임자와 협의하여 판단하여 야 하고, 제작자등이 제기한 이의에 대하여 이의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제작자등에게 통보해야한다.
- ⑥ 시험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시험결과를 적합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5조(결과보고 및 부적합 발생 시 조치) ① 적합조사책임자는 튜닝부품적합조사 결과, 기준에 부적합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제작자등에게 문서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통보 받은 제작자등은 15일 이내에 조사결과에 대한 수용여부를 적합조사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적합조사책임자는 제작자등이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보고 후 재시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5,02,10.>
- ④ 재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시험담당자는 제작자등과 협의하여 재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재시험의 사유가 제작자등에게 있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해당 시험품 구매, 지그제작 등 시험 준비 비용 등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 02.10 >
- ⑤ 제작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부적합함을 스스로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재시험이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적합조사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적합조사책임자는 시정조치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운영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02.10.>
- ⑥ 운영부서장은 제24조에 따른 튜닝부품적합조사 결과가 적합하거나 제5항에 따른 시정 조치계획이 적정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체없이 튜닝부품적합조사 시행결과를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장 수수료

- 제26조(튜닝안전확인 수수료 등) 운영부서장은 제작자등이 튜닝부품에 대한 안전확인심사를 신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이사장이 정한 수수료를 수납하여야 한다.
  - 1. 제17조 제1항에 의한 튜닝안전확인심사

2. 제19조 제1항에 의한 확인표시 발행

#### 제7장 보 칙

- 제27조(자료보관) ① 운영부서는 튜닝부품 안전확인 업무 등에 관한 문서를 「기록물관리 지침」제10조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에 따라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튜닝부품 안전확인 업무 등에 관한 문서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해서는 「기록물관리지침」 제16조에 따른 평가·폐기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 제28조(전산망의 운영) 운영부서는 본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 규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 제29조(기타사항) 운영부서는 본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규정 제1472호, 2024.06.11>

이 규정은 2024년 0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500호, 2025.02.10.>

이 규정은 2025년 0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튜닝부품 안전확인 업무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 **튜닝부품 확인표시 방법**(제19조관련)

#### 1. 튜닝부품 확인의 표시

- 가. TS는 "Transportation(교통)과 Safety(안전)"의 약자를 의미하며, TS를 확인로고 라 한다.
- 나. 튜닝부품 확인표시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3:4의 비율로 한다. 다만, 부품의 크기 및 포장재의 크기에 조정함 수 있다.
- 다. 확인표시에는 확인로고, 관리번호, 부품명, 일련번호, 적용대상을 표시한다.
- 라.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동차 튜닝 부품의 성능 및 품질에 관한 확인을 받은 제품임을 표기 하여야 한다.
- 마. 자동차 튜닝부품 확인표시를 표기할 때에는 URL(튜닝부품인증관리전산망의 URL 주소), 튜닝 부품명, 관리번호, 제조사 정보 등을 포함하는 QR코드를 표기하여야 한다.

#### 2. 튜닝부품 확인표시의 예 <개정 2025.02.10.>



#### 3. 관리번호 표기

가. 관리번호는 12자리로 부여한다.

구 분	1(나)	2(다)	3(라)	4 <sup>(마)</sup>	5	6	7 <sup>(1)</sup>	8	9	10	11(사)	12
부여 기준	인증 기관 분류	차종 분류	부품 분류		투닝부= 제작사			일련	번호		연	দ

- 나. 이 규정에서 정한 인증기관의 분류는 T(대문자)로 한다.
- 다. 이 규정에서 정한 차종분류는 자동차 1(숫자), 이륜자동차 2(숫자)로 한다.
- 라. 튜닝부품의 분류는 아래와 같다.

구분	표기	구분	표기
원동기 및 동력전달 관련 부품 및 시스템	A	조향부품 및 시스템	В
주행부품 및 시스템	С	제동부품 및 시스템	D
소음방지장치	Е	차체 및 차대부품 및 시스템	F
조종부품 및 시스템	G	완충부품 및 시스템	Н
연료부품 및 시스템	I	전기 및 전자부품 및 시스템	J
연결 및 견인부품 및 시스템	K	등화부품 및 시스템	L
실내의장 부품 및 시스템	M	기타 부품 및 시스템	N
드레스업 부품 및 시스템	О	빌드업 부품 및 시스템	Р

마. 튜닝부품제작사 고유번호는 아래와 같다.

구분 자리	국내 제작자	수 입 자
첫째 자리	$A \sim W$	0~9
둘째 자리	0~9	0~9
셋째 자리	1~9	1~9
주) 1. 알파벳	의 경우 I, O, Q,를 제외한 알파벳 또는 o	·라비아숫자로 표시한다.

- 바. 일련번호는 서류심사 통보 순서로 한다.
- 사, 적용연도는 아래와 같다.

년도	부호	년도	부호	월	부호
2010	А	2031	1	1	А
2011	В	2032	2	1	7.1
2012	С	2033	3	2	В
2013	D	2034	4		
2014	Е	2035	5	3	С
2015	F	2036	6		1
2016	G	2037	7	4	D
2017	Н	2038	8	5	Е
2018	J	2039	9	0	
2019	K	2040	А	6	F
2020	L	2041	В		
2021	M	2042	С	7	G
2022	N	2043	D		
2023	Р	2044	Е	8	Н
2024	R	2045	F	9	J
2025	S	2046	G	9	J
2026	Т	2047	Н	10	K
2027	V	2048	J		
2028	W	2049	К	11	L
2029	X	2050	L		
2030	Y	_	-	12	M

- 주) 1. 사용부호는 I,O,Q를 제외한 알파벳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한다.
  - 2. 연도별 표기부호는 2010년 이전 또는 2050년 이후에 제작된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 아. 관리번호는 확인표장과 함께 부품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부품의 크기가 작 아 표기가 불가능하거나 기타 표기사항 등으로 표기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관리번호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자. 튜닝부품 확인표시는 육안으로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훼손되지 않도록 부품 에 표시하여야 한다.

## 튜닝부품시험 신청서 접수 및 발급대장

접	수	부품명	신	신청 인	시 험 항 목	시험기간	발	급	확 인 자
번호	일자	(형식)	대표자	주소	1007	16710	번호	일자	

210mm×297mm[백상지(80g/m³) 또는 중질지(80g/m³)]

## 튜닝안전기술위원회 보안 및 청렴 서약서

본인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튜닝안전기술원의 튜닝부품 안전확인 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의한 기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득한 사항에 대해 관련자료 (사실)의 외부유출 및 발설 금지 등 비밀을 엄수하고 법인 또는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보완상의 책임과 민·형사상관련법령에 의한 조치를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및 직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튜닝부품 안전확인 업무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02.10.>

## 회 의 록

	기술	늘 위 원 회				
장 소		일	시	년	월	
					00:00 ~	00:00
참 석 위 원						
=1 01 111 0						
회 의 내 용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튜닝부품 안전확인 업무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삭성하지 접수번호	<u></u>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기관명(법인명)		법인(사업	업자)등록번호	
신청인	대표자명		대표자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u> </u>	
시험 부품					

튜닝부품 안전확인 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튜닝부품 시험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신청합 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귀하

	1. 정관사본 2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부	
	3. 대표자,전문인력 등 명단 각 2부	수수료
첨부서류	4. 시험시설의 명칭, 수량, 성능 및 그 소재지를 기재한 서면 2부	—
	5. 시험업무규정(담당자 기재)	없음
	6. 시험기관이 튜닝부품확인시험을 시행할 수 있는 부품의 종류 목록	
	각 2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b>→</b>	검토	<b>→</b>	심사	<b>→</b>	확인서 발급	
신청인	,	공단		공단		공단		공단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시험기관 지정서

■ 튜닝부품 안전확인 업무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신청인	기관명(법인명)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대표자생년월	실일	
	주소							
시험 품목								
튜닝부품 안전	전확인 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튜닝부품	시험기관으로	지정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튜닝부품제작자등 등록ㆍ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제작자명(법인명)	법인(사업	자)등록번	호	
신청인	대표자성명	대표자생님	년월일 -		
	주소				
			(전호	·번호:	)
	상호(법인명)				
최초 제작자			(※수	입자만 해당합니	다)
되도 세탁자	주소				
			(전호	·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제작구분	[ ] 국내 제작·조립자 [	] 수입자			
자동차부품명					

튜닝부품 안전확인 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Γ.	1 위와	간이	튜닝부품제작자등	드로은	시천하니	다
--	----	------	----	----------	-----	------	---

- [ ] 위와 같이 튜닝부품제작자등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 위와 같이 튜닝부품제작자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_
1 = 1 = 1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귀하

	등록	1.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자동차부품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계획에 관한 서류 3. 기술인력 확보에 관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변경	1. 법인 명칭 및 주소의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2. 대표자 성명의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재발급	1.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헐어 못쓰게 된 등록증	

			j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b>→</b>	접 수	<b>→</b>	검 토	<b>→</b>	심사	<b>→</b>	등록증 발급
신청인		공단		공단		공단	_	공단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튜닝부품제작자등 등록증

■ 튜닝부품 안전확인 업무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제작자명(법인명)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대표자명 대표자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제작구분	[ ] 국내 제작·조립자 [ ] 수	입자			
최초 제작자	제작자명				
수입자만 해당)	주소				
제작등을 하는 자동차부품명					
제작구분 최초 제작자 구분 (수입자만 해당) 제작등을 하는	제작자명	·입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직인

튜닝부품 안전확인 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튜닝부품제작자등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튜닝부품 확인ㆍ변경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일		
	기관명(법인명)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생년	월일			
신청인	주 소					(전호 (팩스		)
	사업장소재지					(전호 (팩 <i>스</i>		)
FLELTI	성 명			연락처				
담당자	직 위			e-ma	ai l			
부품명 (모델명)	적용대상	가능차종 대상범위	증	t치 구분	안전확인 및 8		비고	

튜닝부품 안전확인 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 [ ] 튜닝부품 안전확인을 신청합니다.
- [ ] 튜닝부품 안전확인 변경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신규	1.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튜닝부품의 제원, 구조 및 형식 등이 포함된 제원표 3. 안전확인을 받으려는 튜닝부품의 외관도 4. 대표자 서약서 5. 튜닝부품의 시험결과를 증빙하는 자료(선 시험을 한 경우에 한함) 6. 그 밖에 공단이 튜닝부품 안전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변경	1.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변경 전·후 제원, 구조 및 형식 등이 포함된 제원표 3. 변경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b>→</b>	접수/검토	→	안전확인 시험	<b>→</b>	심 사	<b>→</b>	확인서 발급
신청인		공단		시험기관		공단		공단

####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대표자 서약서

■ 튜닝부품 안전확인 업무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서식]

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본 업체는 튜닝부품확인을 신청함에 있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확인 업무규정에서 제시하는 안전 평가 수행절차 등에 관한 요령을 충분히 숙지 및 이해하고 있으며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1. 본 업체는 튜닝부품확인 관련 규정을 항시 준수하며,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에 의한 평가, 사후관리 재평가 및 불만 해결을 위해 필요한 문서의 조사 및 모든 장소에의 출입, 기록(고객불만조사 보고 서 포함)의 열람 및 직원과의 면담을 포함하여 안전평가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모든 준비사항을 완비 하겠습니다.
- 2 본 언체는 확인을 받은 제품에 한해서만 확인표기를 할 것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명예를 소상시키거 나. 기술원의 확인업무를 오도 할 수 있는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겠습니다.
- 3. 본 업체는 확인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확인서 발급사실이 언급된 모든 광고물의 사용을 중지하 며, 기술원의 요구에 따라 일체의 확인 문서를 반환하겠습니다.
- 4. 본 업체는 확인서, 확인표시, 또는 그 어떤 일부라도, 오도하는 방식으로 사용치 않을 것입니 다
- 5. 본 업체는 문서, 홍보물 안내책자 또는 광고 등의 매체에 부품확인 현황을 언급할 경우 한국교통인 전공단의 요구사항을 준수 할 것이며, 기타 본 업체가 이행하여야 할 모든 사항을 요령에 따라 성 실히 수행하고, 평가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6. 본 업체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협의 없이 제출한 제품의 품질, 안전, 기능성, 특이 성능에 관한 사항을 변경 및 수정하지 않겠습니다.
- 7. 본 업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시정조치 요구시 리콜 또는 적한한 공표 등을 포함한 적절한 시정조 치를 수행하겠습니다.

월 녀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귀하

## 튜닝부품 안전 확인서

	기관명(법인명)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대표자명		대표자생년월일			
	주소					
	부품명(모델명)	시험기준 및 결과	곤	반리번호	적용대상 및 차종	
자동차부품 등의 명칭						

튜닝부품 안전확인 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안전확인심사 결과가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 키 원 9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튜닝부품 안전확인 업무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1호서식]

튜닝부품 안전확인 업무 등에 관한 규정

##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	간	10일	
	기관명(법인명)		법인(사	업자)등	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생년월일				
اماخاما	주 소	본사					
신청인					(전화 : (팩스 :		)
		제조공장			(==	•	
		MI-00			(전화 :	:	)
				(	(팩스	:	)
확인부품명			확인임	일자	년	월	일
사유							

튜닝부품 안전확인 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확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귀하

1.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첨부서류 2. 혈어 못쓰게 된 확인서

3. 그 외, 공단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b>→</b>	접수/검토	-	심사	<b>→</b>	확인서 재발급		
신청인		공단		시험기관		공단		

25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24

■ 튜닝부품 안전확인 업무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2호서식]

## 참관사실 확인서

튜닝부품제작	자명			조사부품				
시험항목				참관인원		명		
참관목적								
제작자명	부	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서명	

튜닝부품 안전확인 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라 공단이 시행하는 튜닝부품적합조사에 참관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튜닝부품 안전확인 업무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3호서식]

## 이의 신청서

튜닝부품제작자명		조사부품					
시험항목		시험일시	년	월	일 일		
이의신청 내용							

별첨

튜닝부품 안전확인 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라 공단이 시행한 튜닝부품적합조사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신청인(제작자 또는 수입자명)

(서명 또는 인)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귀하